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표준번호 : NEX1(C)-330-01

제정·개정·폐지권자	구매기획팀장
제 정 일 자	2018.08.01
개 정 번 호	5
기 안 부 서	구매기획팀

LIG 넥스원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1 / 12

■ 개정이력 일람표

No.	년 월 일	구 분		개 정 (확 인) 내 용	기록자
		확인	개정		
0	2018.08.01			- 제정	김국록
1	2021.10.01		●	- 부정당·부적격 협력회사 제재심의회 운영절차 변경	허동근
2	2022.01.27		●	- 협력회사 등록절차 개정(안전보건 역량평가)	허동근
3	2022.11.01		●	- 협력회사 평가, 분류, 등록·운용 개정	박수현
4	2023.05.22		●	- 협력회사 등록절차 개정(안전보건 역량평가) / 협력회사 등록분류 3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거래선 재사용에 관한 사항 추가 / 신규거래선 재무역량 상향 조정	김종범
5	2023.11.01		●	- 공정거래위원회 실천사항 추가, 협력회사 등록 분류(승인 거래선, 조건부등록거래선) 조정	김종범

(주) 1. 개정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기록 하십시오.

2. 개정이력이 1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앞의 이력을 삭제하십시오.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2 / 12

제 1 조 (목적)

본 기준은 원사업자의 협력회사 등록·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협력회사"라 함은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회사 풀(Pool)"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영하는 협력회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회사 등록"이라 함은 협력회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회사 운영"이라 함은 협력회사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회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협력회사 등록·운영 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회사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회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홈페이지 및 협력회사 인터넷포털(n-ISP)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회사 등록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협력회사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등록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회사 등록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등록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회사 등록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2. 협력회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3 / 12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회사 등록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등록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제공)

협력회사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원사업자는 협력회사 등록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홈페이지 및 협력회사 인터넷포털(n-ISP)) 등에 15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조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협력회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직원의 실천사항 준수)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협력회사 등록 분류)

- 일시 거래선(분류기호 "I")
 - 일시거래선은 1회성 거래를 위해 등록된 거래선을 말한다.
 - 일시거래선은 2회차 이후 거래가 불가능하며, 2회차 이후 거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 협력회사 등록 절차에 따라 재 등록한다.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4 / 12

2. 승인 거래선(분류기호 "Y")

제12조 협력회사 등록 절차에 따라 정상 등록된 거래선을 말한다.

3. 조건부 등록 거래선(분류기호 "R")

"제12조 4항 나"호에 따라 조건부 등록된 거래선에 대해 "조건부 등록 거래선"으로 분류한다. 조건부 등록 상태가 해지가 되면 "승인거래선"으로 재 분류한다.

4. 정지거래선(분류기호 "N")

가. 정당한 거래 경쟁에서 탈락하여 3년이상 거래실적이 없고 향후 사업에 있어 거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선을 말한다. 단, 1.~ 3.항의 거래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지거래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① 구매심의회(제재 또는 Risk Management 심의회)에서 거래 단절이 의결된 거래선
-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선

나. 3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거래선에 대해 정지거래선으로 비 전환하는 경우 :

- 제12조 2항의 ①거래선 실태 조사서, ⑦신용평가서를 입수하여 재무역량이 당사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고, 거래선 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등록한다.
- 단, 제12조 1항의 서면심사 대상 거래선에 대해서는 ①거래선 실태 조사서만을 입수하여 거래선 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등록한다.

5. 정지거래선 관리

가. 매년 거래실적, 구매심의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정지거래선으로 분류하고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나. 정지거래선 통지를 받은 업체는 1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즉시 재등록 조치한다.

다. 정지거래선으로 분류된 업체는 신규거래가 중지되며, 재거래 필요 시 제12조 협력회사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적합한 거래선을 등록(승인, 조건부승인, 일시) 거래선으로 전환한다.

6. 협력회사(거래선)등록부

협력회사(거래선)등록부를 유지 및 관리한다.

제 12 조 (협력회사 등록 절차)

1. 신규거래선은 거래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5 / 12

단, 다음의 거래선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의 구비 및 정확성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가. 대기업
- 나. 부자재 및 표준품 판매업체
- 다. 산학연(학교, 국책연구기관)
- 라. 기타(역량평가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업체)

2. 신규 거래선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심사구분	필요서류
일시	서면심사	①거래선 실태 조사서 ②거래선 등록 추천서 ③거래개설서(사업자용) ④적격 수급업체 평가 결과서 (제12조3항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대상에 한함)
	승인	상동
승인	서면심사	상동
	역량평가	⑤역량평가 결과서 ⑥신용평가서 ⑦회사소개서

※ 재등록 시, 기존 등록 대비 변경사항만 확인 후 등록

3. 역량평가 절차

- 가. 역량평가는 재무역량, 기술역량, 제조(품질경영)역량, 안전보건역량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나. 재무역량을 우선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의하고 기술, 제조 역량평가 및 안전보건역량 평가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한다.
- 다. 재무역량 평가
해당 거래선의 최신 신용평가서(공인된 신용평가 기관이 발급한 문서에 한함) 및 재무제표를 근거로 등록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라. 기술, 제조역량 평가
 - (1) 기술역량과 제조역량 평가는 해당 거래선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2) 방문평가팀의 구성
 - (가) 방문평가팀을 구매, 기술(설계 또는 생산기술), 품질 부서 각 1인이상으로 구성한다.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6 / 12

(나) 평가팀의 팀장을 해당 거래선에 발주예정인 구매부서의 구매인원으로 지정한다. 단, 부서 및 인원은 대상업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평가자의 자격

(가) 기술역량부문 평가자는 해당 거래선의 품목 전문가로 선임연구원 이상인 인원을 평가자로 등록한다.

(나) 제조역량부문 중 구매항목 평가자는 구매업무 경력 만3년(신입), 만2년(경력) 이상인 구매인원을 평가자로 선정한다.

(다) 제조역량부문 중 구매 이외의 품질경영(LSQR) 항목 평가자는 내부심사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인원으로 선정한다.

(4) 평가점수 산정

평가점수는 기술 및 제조(품질경영) 역량 2개 부문별 점수를 각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며, 세부내용은 "거래선 역량평가 Check sheet"를 기준으로 한다.

마. 안전보건역량 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기준[NEX1(S)-601-13]"에 따른다.

4. 역량평가를 완료한 후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여 "거래선 등록 품의서"를 작성하고,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승인을 득한 거래선을 구매시스템에 등록한다.

가. 등록기준

(1) 역량평가 대상거래선은 재무역량부문의 모든 항목의 기준을 만족하고 기술 및 제조 역량 부문의 방문평가결과 및 안전보건역량 평가 점수가 각 부문별 80점 이상인 경우 "등록적합"으로 판정한다.

(2) 서면심사 대상은 향후 거래와 구매목표 달성에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적합"으로 판정한다.

(3) 재무역량

판정	평가결과	등급	비 고
등록적합	모든 항목 만족	안정	신용평가결과 "BB-"등급 이상 포함
등록부적합	1개 항목이상 불만족	불안정	신용평가결과 "BB-"등급 미만 포함

(4) 기술 및 제조역량

판정	평가결과	등급	비 고
등록 적합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7 / 12

등록 부적합	70점 이상	C	거래부적합 또는 조건부 등록 필요
	70점 미만	D	

(5) 안전보건역량

판정	평가결과	등급	비 고
등록 적합	90점 이상	A	우수
	80점 이상	B	보통
등록 부적합	80점 미만	C	부적격

나. 등록부적합 거래선의 조건부 등록

- (1) 구매부서장은 가.호 등록 기준에 의거 '등록 부적합'으로 판정된 거래선에 대해 신규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건부등록 심의회를 실시할 수 있다.
- (2) 조건부등록 심의회는 구매부서장, 등록추천부서장이 참석하며 해당 거래선의 평가결과 및 등록사유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3) 조건부등록으로 결정된 거래선은 'Risk 관리 대상 거래선'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4) 조건부등록된 거래선의 부적합 항목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조건부등록상태를 해지한다.

구분	시기	해지 기준
재무역량 부적합	결산완료 시	제12조4.가.(3) 적합기준 만족
기술/제조역량 부적합	보유역량평가	정기(3년)/수시 제12조4.가.(4) 적합기준 만족
	거래실적평가	정기(반기) 제13조3.마. B등급 이상
안전보건역량 부적합	정기(2)년/수시	제12조4.가.(5) 적합기준 만족

5. 신규등록이 완료된 거래선과 거래개설계약서를 상호 체결한다.

제 13 조 (협력회사 평가)

1. 목적

협력회사의 거래실적과 보유역량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공급 안정성과 경쟁력 있는 우수 협력회사를 확보, 유지함으로써 구매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 신용평가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8 / 12

가. 평가대상업체

- (1) 당사와 거래실적 최근 3년 합산 5억 이상인 협력회사
- (2) 최근 1년 이내 신규등록 협력회사
- (3) 단, 아래와 같은 협력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일시거래선, 정지거래선인 협력회사
 - (나) 제12조 2항의 역량평가를 생략한 협력회사

나. 평가주기

매년 평가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방법

전문 신용평가회사와 연계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3. 거래실적 평가

가. 평가대상업체

- (1) 평가기간 내 거래실적이 있는 협력회사
- (2) 단, 아래와 같은 협력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거래실적이 납기건수 20건이하 및 금액 1억원 이하인 협력회사
 - (나) 제4조 2항의 역량평가를 생략한 협력회사

나. 평가주기

매년 평가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방법

평가는 개발용과 양산용 거래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개발/양산 거래금액의 비중에 비례하여 부문별 평가점수를 계산하고, 부문별 배점비중을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라. 평가항목 및 배점

부문	배점비중	구분	항 목
납기	35%	양산	납기준수율, 단납기 준수율(가점), 평균지연일(감점), 발주처 납기지연(감점)
		개발	납기준수율, 평균지연일(감점), 발주처 납기지연(감점)
품질	35%	양산	입고품질(IQC), 체계공정품질(RTN), Field 품질, 개선대책회신율, 품질개선실적(가점), 시정조치건수(감점)
		개발	MRR 미준수율, 일숨씨 불량률, 수락검사 미준수율, 수락검사 불량률, 입고검사 미준수율, 입고검사 불량률, 형상관리절차 미준수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9 / 12

원가	20%	양산	원가절감률, 원가절감금액(가점)
		개발	
협력	10%	양산	협력만족도
		개발	
합계	100%		

마. 평가결과 판정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등 급	A	B	C	D

4. 보유역량 평가

가. 평가대상업체

- (1) Sourcing Group A, B군에 소속된 협력회사 중 최근 평가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협력회사
- (2) MRA 대상지정 등의 사유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고객 및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협력회사
- (3) 단, 아래와 같은 협력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직전년도 거래실적이 1억원 이하인 협력회사
 - (나) 주문잔량(Backlog)이 1억원 이하인 협력회사
 - (다) 제4조 2항의 역량평가를 생략한 협력회사

나. 평가주기

- (1) 매년 정기역량 평가대상을 선별하고 대상이 있는 경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2) 정기평가와 별도로 협력회사 중 보유역량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평가대상 업체를 지정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보유역량 평가는 제4조 협력회사 등록절차의 방문평가 중 등록판정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방법, 항목, 배점, 판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시한다.

5. 평가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가. 평가결과를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보고한 후 전산등록한다.

나. 협력회사별 평가결과를 협력회사에 통보 및 공지하며, C 또는 D 등급의 협력회사 중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10 / 12

지속적인 거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회사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급안정성 역량과 평가결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 협력회사별 평가결과는 Sourcing Group 편성 시 활용한다.

제 14 조 (Sourcing Group 운영)

1. 목적

협력개발품 및 사양품의 품목군별 우수협력회사가 구매계약거래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수협력회사 Pool을 구축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기여하는 데 있다.

2. 운영방법

가. 협력회사별 공급역량(Y축), 상생협력도(X축)를 평가하여 포지션을 분석한다.

(1) 공급역량 (Y축)

항목	평가 내용
거래 실적	Q, C, D, R 실적
보유 역량	기술, 제조, 품질 역량
재무 역량	신용평가결과
거래 물량	거래물량비중 평가결과

(2) 상생협력도 (X축)

항목	평가 내용
거래 이슈	거래 이슈 평가결과
경영 Risk	경영 Risk 평가결과
경영 Mind	경영 Mind 평가결과
품질협력도	품질협력도 평가결과

나. 분석결과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Sourcing Group을 편성한다.

LIG 넥스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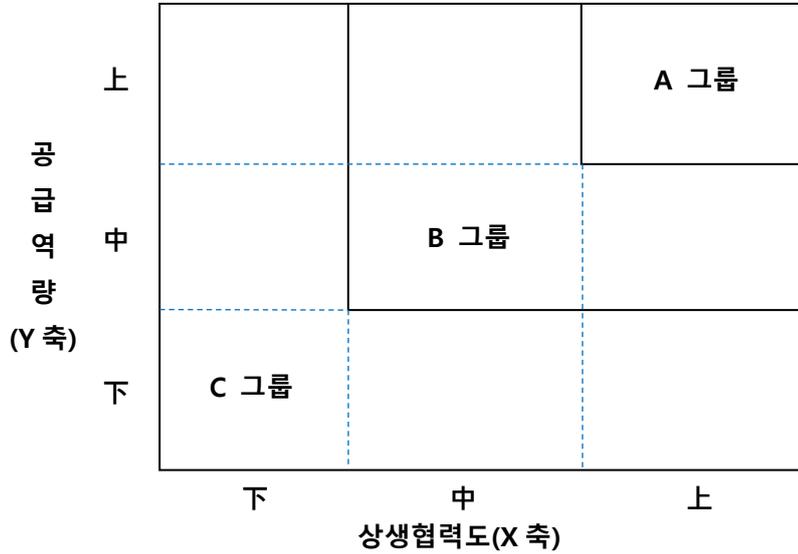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11 / 12



다. Sourcing Group의 세부운영은 Sourcing Group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 15 조 (부정당·부적격 협력회사 제재 조치)

1. 제재조치 기준

제 재 사유	제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 행위가 적발되어 제재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 당사와의 거래에서 부정당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경영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당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공정·투명한 구매환경을 저해한 경우 ◦ 상생협력의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로 당사의 사업 수주 또는 계약수행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 중대한 품질결함 또는 납기지연으로 당사에 유·무형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재무상태 악화로 당사의 사업수행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거래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기간 : 3개월 이상 - 대상사업 : 신규개발사업 또는 특정사업 - 대상품목 : 전 품목 또는 특정품목 ◦ 거래단절 정지거래선으로 분류

2. 제재심의회 운영

부정당·부적격 협력회사의 제재조치는 제재 심의회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

구 성			의결 방법
심	위원장	구매담당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12 / 12

의 회	위원	구매부서장 및 법무, 진단, 품질, 사업(연구소) 등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단,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상기 외 관련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음.	의결로 제재수준을 결정함.
	간사	구매기획부서장	

3. 운영절차

- 가. 협력회사의 부정당·부적격 행위를 확인한 구매, 품질, 연구, 생산부서장은 사실관계, 귀책과 원인, 향후 사업 영향을 분석하여 제재심의회(위원장)에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심의를 요청한다.
- 나. 구매부서장은 안건에 대한 해당업체의 의견을 입수하여 심의회(위원장)에 제출한다.
- 다. 위원장은 제재심의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부정당·부적격 행위의 경중과 제재조치에 따른 사업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의결한다.
- 라. 위원장은 심의회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 마. 구매부서장은 심의회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바. 제재 의결후 심의의 근거 내용이 변경 또는 종결되는 경우 위원장은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사. 제재 확정 전 이라도 “구매심의회 운영기준(별첨#1)”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6 조 (관련 표준)

1. 구매관리 프로세스(NEX(C)-310)

제 17 조 (부칙)

1. 이 기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3. 이 기준은 2022년 1월 27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4. 이 기준은 2022년 11월 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5. 이 기준은 2023년 5월 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6.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부로 일부 개정한다.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18.08.01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개정번호 : 3

개정일자 : 2023.11.01

페이지 : 13 / 12

별첨#1. 구매심의회 운영기준

1. 기능

위원회는 협력회사의 부정당·부적격 제재 조치 이전 협력회사에 대한 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외부기관 감사와 협력회사의 내부 고발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될 때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제15조의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사전 제재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2. 구성

- 위원장 : 구매실장
- 상임위원 : 구매 부서장(개발/양산/해외)
- 비상임위원 : 사업부/연구소/생산/품질 부서장, 필요시 참석
- 간사 : 구매기획 부서장

3. 의결 사항

- Sourcing Group 등급조정 : 등급하향 및 Sourcing Group OUT
- "협력회사 등록·운영 규칙" 제15조 "부정당·부적격 협력회사 제재 조치" 기준에 준하는 결정
 - 신규 거래 중지 : 3개월 이상
 - 거래 단절 : 정지거래선으로 분류